

2023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요일) 15:00 ~ 16:00

○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이동현, 김종석, 백기태, 김사옥, 손정민, 주호종, 조화림, 황인섭, 박윤서, 배준수, 양수정, 이현욱 위원

○ 불참자 : 정우상, 최시영, 박상민 위원

○ 상정안건

-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23년도 임금협약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최경락)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23년도 임금협약안」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황인섭)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15명 중 총 12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황인섭)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김태성)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본 안건에 대해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위원은 (황인섭)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2023년도 임금협약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임금협약안」에 대하여 설명함 (남윤희)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입학사정관 기타수당이 없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작성이 안 된 건가요? (주호중)

인사팀장 : 맞습니다. 이번에는 인상되는 부분만 넣어놨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윤희)

위원 : 또 하나는 입학처 직원들의 수당 등을 변동해서 연봉 인상 부분을 대체한다고 (주호중)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나요?

인사팀장 : 네, 사업비에서 수당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하여 총장님 결재 받고 수당 상향하는 것으로 (남윤희) 노조, 입학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학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사업비에서 수당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지난 회의 때 임금협약안에 대해 한번 검토를 했는데 오늘 이 안건이 다시 논의되는 (박윤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팀장 :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호봉제 직급보조비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직급별로 (남윤희) 단가를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155천원에서 175천원 상향으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다르듯이 대학회계직도 직급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달리해달라는 노조 측의 요청사항이 있어, 직급별로 단가를 다르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급에 따른 조정이 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백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 대학회계 결산에 보면 대학회계직원이 303명인데 현재 임금협상안에는 248명입니다. (배준수)

인사팀장 : 기간제 계약직원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윤희)

위원 : 그분들의 임금인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배준수)

인사팀장 : 기간제 계약직원의 경우 보통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년 정부에서 상향하는 금액만큼
(남윤희) 책정을 하고 있어서 따로 요구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리원으로 퇴직 후 1년 정도씩 근무하시는 촉탁직원 분들입니다.

위원 : 앞서 박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 노조 측과 협의가
(백기태) 완료된 상황에서 재정위원회 상정이 되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기획처장님 말씀처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안건
(황인섭) 처리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팀장 : 협약안에 대해서 노조와 주고받으며 검토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노조 쪽에서
(남윤희) 요구했던 내용을 서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했던 부분인데 올해만 달리 적용하면 직원 분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렸습니다.

위원장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황인섭)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심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당초 15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75천원에서 185천원으로 인상을
(손정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 6~9급 모두 직급보조비를 175천원으로 계산했었는데 이번에는 6급 10명은 185천원,
(백기태) 7급 36명은 180천원으로 계산하니까 총액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 대학회계 호봉제만 직급을 구분하나요? 생활관 호봉제 직원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박윤서)

인사팀장 : 호봉제만 임금협약 표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관 호봉제의 경우 직급이 따로 정해져
(남윤희) 있지 않고 자체 호봉표를 쓰고 있어서 똑같이 이 금액을 적용하면 맞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중)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기 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절차상 문제 확인을 하고 다시 대면이든 서면이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 지난 회의 때 안건 제목이 동일하게 2023년도 임금협약안이었습니다. 이번 안건이
(이동현) 통과되면 전에 통과된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인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제안이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위원님 모두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제목과 제안이유를 바꿔서
(박윤서) 정확성이 맞도록 한 다음 서면결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아까 논의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렇다면 2023년도 임금협약 수정안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안자가 앞서 설명한
(백기태) 내용을 제안이유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검토는 했지만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든지 감사에서
(박윤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면 서면결의로, 아니라면 다음 회의를 소집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본 안건에 대해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보다는 절차상 문제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한
(주호중) 후에 서면결의 또는 대면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 위원 : 재청합니다.
(전체)
- 위원장 : 절차상 문제를 확인한 후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찬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비용에 관한 법률' 제9조
(황인섭)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따라 출석 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間)서명을 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회의 때는 김종석 위원님, 박윤서 위원님, 양수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위원 : 이동현, 박윤서, 양수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기태)
-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 위원장 : 이동현, 박윤서, 양수정 위원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섭)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락)

작성일 : 2023. 9. 8.(금)

위 원 장 : 황 인 섭 (인) 
간 사 : 최 경 락 
기 록 자 : 부 찬 미 

  